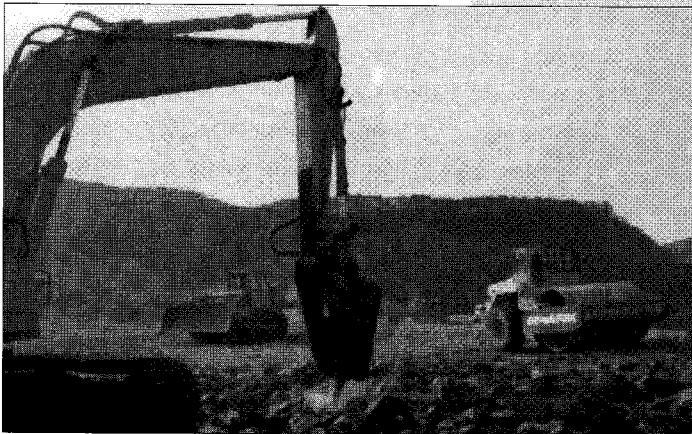


건설업계 첨단 환경사업 진출러시

건설업체들이 환경관련 선진 외국업체와 손을 잡고 첨단 쓰레기처리설비 건설 등 시장전망이 밝은 환경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 진로건설, 기산, 삼익건설 등은 환경분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플라스마, 노엘, 서모셀렉트사와 협작사 설립, 기술계약 등을 통해 쓰레기 및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설비등의 건설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오롱 건설은 독노엘사와 쓰레기 처리 시스템 기술이전



계약을 하고 쓰레기 소각 시설과 기타폐기물 처리설비 건설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로건설도 최근 미 플라스마사와 함께 진로플라스마사를 설립해 다이옥신 배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소각방식을 대체할 전기스파크 용융방식의 쓰레기 처리설비를 도입, 환경관련 건설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삼익건설의 경우는 유럽지역 업체인 PKA사와 손 잡고 용융방식을 이용한 첨단 쓰레기처리설비 등 환

경관련 건설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기아그룹 계열 기산은 스위스 서모셀렉트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하고 가스열분해 용융 방식의 쓰레기처리설비를 국내와 동남아 등 제 3국에 건설하는 것 등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환경사업분야 연매출을 5천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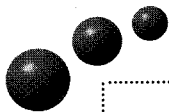
이밖에 지난 6월 10일 환경사업 진출을 위해 이 분야 전문업체인 미 IT사와 합작회사를 설립기로 하고 합그룹은 이 합작회사를 통해 오는 2000년까지 연매출 3천억원을 달성키로 목표를 세우고 원자력 폐기물, 맹독성 산업폐기물 및 군사용 위험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환경관련 대형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환경사업과 관련, 쓰레기처리설비 시장만해도 연평균 1조3천억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를 소각방식 대신 열 또는 가스스파크를 이용한 용융방식으로 처리하는 설비가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처럼 선진업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환경부 국내 처음 '물지도' 제작키로

전국 곳곳의 작은 시냇물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물지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용해 온 행정지도로는 각 하천의 흐름과 오염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수질개선정책수립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모든 하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하천수계관리지도를 작성키로 했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흘러들어가는 7백 50여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상·하류 등을 자세히 수록한 전산지도를 제작키로 하고 곧 용역을 의뢰, 늦어도 9월말까지 '물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행정구역별이 아닌 하천별로 전국을 7백50여군데 이상으로 나뉘 세부적인 '물지도'가 작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 지도를 제작하면서 7백50여개의 하천별로 각 코드를 부여하고 하천별로 가옥수와 인구, 축사 및 공장현황, 경작지 위치와 면적, 임야실태 등을 자세히 수록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지도를 보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축사 및 공장, 가옥 등 수질오염원을 즉각 파악할 수 있어 수질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전국 행정지도를 토대로 전국 1백95개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목표수질을 정해 관리해 왔으나 행정지도의 경우 단순한 행정구역 구분만 돼 있어 수질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수질을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부 고재영 수질정책과장은 "곧 선보일 '물지도'는 수질정책에 새로운 '헌법'이나 '바이블'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이 지도는 효과적인 수질개선정책을 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속공무원 직무범위 대폭 확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환경단속 공무원의 직무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6월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은 최근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환경단속 공무원의 수사권 행사 대상 법률을 현행 6개에서 14개를 새로 추가해 모두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 정기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환경단속 공무원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관련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해 왔다.

새로 수사권이 확대되는 법률을 보면 ▲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 ▲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수도법 ▲ 하수도법이다.

또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먹는물 관리법 ▲ 토양환경 보전법 ▲ 지하수법 ▲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4개다.

환경단속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이들 14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만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박명술 환경조사과장은 "앞으로 환경단속 공무원의 직무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돼 수질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속 공무원은 전국 지방환경청과 시도 단속 공무원 등 약 7백20여명에 달하고 있다.

7월부터 달라진 환경정책

7월부터 대도시 오존예보제가 처음 실시되고 수도권 17개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새로운 환경정책이 시행되었다.

▲ 오존예보제 = 오존주의보 발생가능성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는 오존예보제가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에 실시.

또 오존경보제 지역이 이들 6대 대도시외에 경기도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등 수도권 7개 도시까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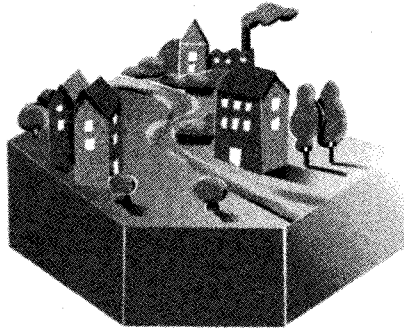
▲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제외), 경기도 수원시와 부천시 등 12개 시 등 모두 17개 지역이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이에 따라 주민 공청회를 통해 2년안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 하천과 호수, 바다로부터 5백m 이내 떨어진 곳에 건립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목욕탕 등은 분뇨와 생활하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골프장, 스키장 오수정화시설설치 = 골프장과 스키장은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골프장의 그늘집도 별도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5년후 차



공할 경우 주변 여건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 저황연료공급확대 =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사용지역이 서울과 인천, 수도권 등 2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 황함유량 1.0% 이하 병커C유 사용지역은 인천과 용인시, 화

성군 등 18개 시군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황함유량 1.0% 이하 경유사용지역이 서울과 부산 등 57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청정연료공급확대 = 아파트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공급 확대대상이 서울은 12평이상, 수도권은 18평이상, 부산과 대구도 18평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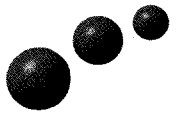
▲ 배출시설 민원처리기간단축 = 배출시설 변경 신고처리기간이 통상 5일이지만 폐업과 휴업, 상호변경, 대표자변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된다.

▲ 축산폐수배출면적 = 젓소의 경우 사육시설에 운동장이 추가되며 돼지사육시설의 경우 축사면적 1백40m²이상, 소 사육시설은 2백m²이상으로 확대된다.

▲ 마을하수도 설치 =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해 자연 마을단위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한다.

5개 영향평가제도 2003년까지 통합

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 등 5개 영향평가의



평가절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통합, 시행되는 데 이어 오는 2003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하나로 완전 통합된다.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문철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차관들과 서울시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절차 통합 5년 후인 2003년에 제도를 완전 통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이들 5개 분야의 영향평가에 대해 별도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의 승인을 따로 받도록 돼 있다. 특히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이같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개 영향평가 용역을 한꺼번에 하나의 평가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나 위원들은 이같은 절차 뿐만 아니라 5개 영향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승인도 한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5개 영향평가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가장 먼저 제도가 시행됐고 가장 광범위한 평가항목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는 3개 분야 23개 항목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재해를 제외한 인구, 교통, 경관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개 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중앙정부의 평가항목을 대폭 줄이는 대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심의 대상으로 넘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심의대상에 신축성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 확대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제조업만 해당됐던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을 앞으로는 유통업체, 숙박업소, 대형병원, 건설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하반기중에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 늦어도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7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 백화점과 호텔, 종합병원, 건설업체 등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백화점과 호텔, 종합병원, 건설업체 등에도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유도해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환경친화기업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5년에 도입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기업체가 대기 및 수질, 폐기물에 관한 환경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며 3년간 유효한 지정기간중에는 환경단속이 면제된다.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이 확대되면 현재 1백 12개인 환경친화기업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1백 12개사를 그룹별로 보면 두산그룹과 LG그룹이 각각 21개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 20개, 한화 10개, 한라 5개, 현대와 제일제당 각 3개, 대우와 쌍용, 한솔 각 2개, 기타 23개 순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0개로 가장 많고 화학 23개, 음식료품 15개, 기계·제강 15개, 유리 6개, 섬유·제지 7개, 기타 16개다. ◀